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은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59

발의연월일 : 2025. 11. 27.
발의의원 : 양은숙 의원,
최재규 의원, 이연숙 의원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마을공동체와 관련하여 기본 조례로서 기능하기 위한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문을 신설하고,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달성군에서 마을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지원받으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나.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다. 지원사업 및 위원회 구성·운영 등 규정 정비(안 제8조~제2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마을공동체에”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에”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사업”이란”을 “활동(이하 “공동체 활동”이라 한다)”이란 주민이 주체가 되어”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을공동체 사업”을 “공동체 활동”으로 한다.

제4조 중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체 활동”으로 한다.

제5조 중 “사업”을 “공동체 활동”으로, “마을공동체”를 “공동체 활동의”로 한다.

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공동체 활동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동체 활동에 관련된 정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의 제목 “마을공동체 사업”을 “공동체 활동”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계획수립)”을 “(기본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매년 사업”을 “공동체 활동”으로 하며,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마을공동체 사업”을 각각 “공동체 활동 활성화”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사업”을 “공동체 활동”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및 지원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사업

3. 마을공동체 발굴·공동체 활동 활성화 지원

4.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조성 및 지원

5. 중앙 및 광역 등 공공기관 사업 중에서 마을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행정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공동체 활동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음”으로,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을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사업”을 “활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마을공동체”를 “공동체 활동”으로, “인정되는”을 “군수가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을공동체”를 “제1항에 따른”으로, “제1항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를 “지원을 하지 않거나, 지원을 중단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밖에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9조제1항 중 “주민”을 “제8조에 따라 주민”으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을 공모할 수 있으며”를 “제8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그”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공동체 활동”으로 한다.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 시, 그 사업의 결과를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비를”을 “제8조에 따라”로, “사업비의”를 “보조금의”로 한다.

제12조 중 “사업에 대한”을 “제8조에 따른 사업의”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중 “마을공동체”를 “제8조에 따른”으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지역위원회” ”를 “ “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마을공동체”를 “공동체 활동”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역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0퍼센트”를 “10분의 6”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마을공동체”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공동체활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달성군의회”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마을공동체 관련”을 “공동체활동 관련”으로, “마을공동체에”를 “그밖에 공동체활동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위원회”를 “위원회”로, **“마을공동체”를 “공동체활동”으로, “부서장”을 “팀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역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를

“위원회의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의”를 “위원회”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 중 “지역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위원회 운영에 관한 준용)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수당 지급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마을공동체의 역량 강화 및 자립기반 조성 등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에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시키고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활동(이하 “공동체 활동”이라 한다)”이란 주민이 주체가 되어 ---------- ---------- ---------- ----------.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여	**제3조(기본원칙)** ---------- ---------- ---------- 공동체 활동----------.

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 공동체 활동----------..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 공동체 활동---------- 공동체 활동에 관한 ----------.
<신 설>	**제5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공동체 활동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동체 활동에 관련된 정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마을공동체 사업	**제2장 공동체 활동**
제6조(계획수립) ① 군수는 매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 공동체 활동----- 공동체 활동 활성화 ----------

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2. 공동체 활동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3. 그밖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 공동체 활동 활성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마을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 군수는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사업 관련 부서들이 긴밀히 협조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7조의2(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및 지원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사업 3. 마을공동체 발굴·공동체 활동 활성화 지원 4.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조성 및 지원 5. 중앙 및 광역 등 공공기관 사업 중에서 마을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행정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공동체 활동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제8조(지원대상)** ① ----- 공동체 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동 활성화를 위해 다음 ------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 강화	5. -------- 활동----------
6. 그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6. ---- 공동체 활동 ---------- 군수가 인정하는 ----------
② 마을공동체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지원을 하지 않거나, 지원을 중단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그밖에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9조(신청) ① 주민 또는 기관·단체 등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 ① 제8조에 따라 주민 ---- 지원----------.
② 군수는 사업을 공모할 수 있으며 공모 방법과 절차 등은 따	② ---- 제8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 지원할

로 정한다.	수 있으며, 그 ----------.
제10조(평가 · 포상) ① 군수는 매년 사업의 결과를 분석 ·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 ·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 포상)**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 시, 그 사업의 결과를 분석 ·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 공동체 활동---------- ----------.
제11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사업비를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의 환수)** ---- 제8조에 따라 ---------- ---------- 보조금의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2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매매 · 양도 · 교환 · 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후단 신설>	**제12조(형성재산의 사용)** 제8조에 따른 사업의 ---------- ---------- ---------- ----------. 이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

	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준용)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지급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준용)** 제8조에 따른 ---------- 보조금----------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
제14조(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사업 및 관련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4조(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 ---------- "위원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공동체 활동 ---------- ----------
제15조(구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제15조(구성)** ① 위원회---------- ---------- ----------.

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 - 10분의 6---------- -----.
1. 당연직 위원: 마을공동체 업무 소관 부서 국장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공동체활동 ----------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2. ---------- ----------
가.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
나. 학계 및 주민 대표, 마을공동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마을공동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 공동체활동 관련 ---------- 그밖에 공동체 활동에 ----------
④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회---------- ---------- 공동체활동 ---- 팀장--------.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를 ---------- 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회의) ①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1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관련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삭 제>

친족관계인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4. 그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역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지역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	**제20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위원회---------- ---------- ----------

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위원회 운영에 관한 준용)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수당 지급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법률)」(2025.4.1. 일부개정, 2025.10.2. 시행)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참고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안 제7조의2)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의안 주관부서인 총무과가 2025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함. 이어 7월 10일, 6개의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운영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다가 감염병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참여율 저조 등의 문제로 중단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에 이어 다시 시작한 사업임. 따라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방향은 당해 연도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확장 가능성 등 구체적인 세부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간지원조직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향을 구체화하여야 하므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안 제7조의2)

작 성 자			
소 속 및 직 위	달 성 군 의 회 의 원	성 명 (연 락 처)	양 은 숙 (☎ 2048)